

특수구급차 위탁 운영 과업지시서

본 과업지시서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제1조(일반사항)

-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"갑"과 "을" 사이에서 "갑"의 환자 및 의료진 이송, 구급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"을"에게 위탁하고 "을"은 "갑"의 업무를 위탁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준수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"을"은 "갑"의 환자 이송을 위해 특수구급차 1대를 운영하며, 특수구급차는 특수구급차기준에 맞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이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, 법률 제개정시에는 "갑"의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"갑"의 이송요청이나 필요한 운행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운행되도록 365일 24시간 특수구급차 1대와 인력(운전원 1명,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)이 즉시 상시 대기 및 투입 가능하도록 한다.
- ④ "을"의 업무의 범위는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모든 업무에 해당한다.

제2조(종사자 관리)

- ① "을"은 「도로교통법」 제73조제4항에 의거 교통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, 이수 후 수료증을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, 발생하는 비용은 "을"이 부담한다.
- ② "갑"은 "을"의 종사자 중 환자 민원 발생 및 근무자세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"을"에게 그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"을"은 "갑"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.
- ③ "을"은 "을"의 종사자에 대하여 구급차 운행에 따른 근무수칙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교육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 또한, 차내 비치된 AED(자동심장충격기) 등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숙달하여야 한다.
- ④ "을"은 "을"의 종사자에 대하여 항상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단정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.
- ⑤ "을"은 "갑"의 근무처에 상주하는 근무인력이 "갑"의 관리부서의 지시에 순응하며, 상호 협조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"을"의 종사자는 근무 중 환자가 승강 시 환자를 친절하게 보조해야 하며, 주행 시에도 환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한다.

⑦ "을"의 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요구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 "을"이 운행중에 일어난 긴급사태 및 사고 발생시(낙상사고, 접촉사고 등)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"갑"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"갑"은 이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3조(구급차 관리)

① "을"은 구급차량의 안전점검의 의무가 있으며, 그로 인한 업무 지장을 "갑"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"을"은 구급차의 운용상황과 실태, 장비 구비현황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하며,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구급차에 비치된 비상구급약 사용 시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, 담당부서에 통보 후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.

④ "을" 차량사고, 정비, 기타 사정으로 인한 어떠한 경우에도 응급환자의 이송 및 기타 이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.

⑤ "을"은 자동차 종합보험 외에 응급환자 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운행되어야 한다.

제4조(기타사항)

① "을"은 환자 이송에 따른 이송료 징수 시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"갑"에 요청에 의한 이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.